

# 7년간의 농업컨설팅,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연구 >

소 영 미  
이 민 건  
이 선 주  
이 호 진

# <목 차>

##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한계

## II . 본론

1. 농업컨설팅의 개념
  - (1) 농업 컨설팅의 연혁
  - (2) 농업 컨설팅의 특징과 종류
2. 농업컨설팅의 현황과 문제점
  - (1) 과거 7년간의 농업컨설팅 현황(전라북도)
  - (2) 과거 7년간의 농업컨설팅에 대한 문제점의 흐름
3. 농업컨설팅에 관한 인식의 차이
  - (1)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 (2) 정부가 바라보는 농업컨설팅의 문제점
    - a) 소득분야
      - i ) 국고비 지원문제
      - ii ) 업체와 농가의 담합행위
      - iii ) 타산이 맞지 않은 업체의 사업진행
      - iv ) 비공개인 농가의 회계분야
    - b) 비 소득분야
      - i ) 생산기술 분야에 치중된 컨설팅

- ii) 농가와 컨설팅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
- iii) 농업컨설팅의 집중도
- iv) 정부의 컨설팅 교육문제
- (3) 업체가 바라보는 농업컨설팅
  - a) 소득분야
    - i) 선(先)조직 후(後)지원체계
    - ii) 농가의 자부담에 대한 인식문제
    - iii) 업체의 이윤창출 문제
  - b) 비 소득분야
    - i) 농업 경영체의 관심부족
    - ii) 컨설팅 주체들의 관점의 차이
- (4) 농가가 바라보는 농업컨설팅
  - a) 소득분야
    - i) 컨설팅 비용부담 문제
  - b) 비 소득분야
    - i) 컨설팅 업체의 집중도와 농가의 의견수렴 문제.
    - ii) 정부의 컨설팅사업 사후감사

### III. 결론

1. 인식의 차이 극복방안과 해결가능성 여부
  - (1) 인식의 차이 극복방안 여부
  - (2) 향후 대책
    - a) 소득분야
    - b) 비 소득분야

### • 참고문헌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미간의 FTA 협상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예상하며 여러 반대운동과 각계각층의 우려스러운 예측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연 FTA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나라 농민일 것이다.

만일 한-미간의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의 미흡함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농림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농가지원 대책 및 향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유 시장 체제에 적응시키려는 교육체제, 경영규모 확대, 시설자동화 및 계열화, 생산단지의 조성, 유통구조의 개선, 기술개발을 내놓고 있지만 한껏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많은 시위운동, 집회, 해외원정집회 계획 등을 보더라도 쉽게 꺼지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999년부터 농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정부가 내놓은 농업 컨설팅 지원정책이다.

현재는 민간법인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농림부의 정식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고 기업체, 대학 간을 포함한 컨설팅 업체의 업소수는 총 150여개 이상에 달하기 이르렀다.

농림부가 정식으로 농업 컨설팅 정책을 시작한지 7년여가 지났

다. 지금껏 농업 컨설팅의 많은 성공사례와 통계자료가 연구논문이나 언론 및 정책 자료집에 보도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농업 컨설팅의 성공사례라고 하면은 소득증가의 측면만을 강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소득증가 이외의 문제 즉, 조직관리, 리더, 농가의 전문성 향상 등은 간과한 부분이 있다.

또한 농업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농업분야의 전문가, 경영관리 전문가, 각 학회의 전문가, 컨설팅 법인업체의 컨설팅이 농가들에게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문적인 컨설팅의 기술적 측면과 회계적 측면을 농가들이 과연 전문적으로 잘 받아들였는가와 그로인해서 농가경영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이어도 한 당사자인 수혜자 입장에서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지, 그것으로 인해 정부의 국고가 낭비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가 있다.

WTO, DDA등 다자간 무역체제는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세계무역의 흐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교적 농지가 부족하고 도시인구밀도는 높은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농업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한-미간 FTA에도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컨설팅의 발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앞으로 과거 7년간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농업컨설팅에 대한 결과 분석과 보완책, 향후 이러한 부작용에 대체할 만한 정책 및 대안을 실질적 농업컨설팅의 중심인 수혜자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7년간의 농림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농업 컨설팅은 민간법인을 통하여 개별 농가들과 사업을 진행시켜왔다. 지난 농업 컨설팅에 대한 진행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나 논문은 많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농업 컨설팅에 대한 성공사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실패사례나 농업컨설팅의 보완점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연구가 적은편이어서 이것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갈수록 농림부나 농업컨설팅 민간업체의 전문성은 갈수록 높아 지는듯하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농가들의 농업컨설팅 수혜자는 농업컨설팅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여 컨설팅업체의 권고사안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살펴본다.

둘째, 지난 7년간의 농업컨설팅에 대한 문제점을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정책을 수립하였지만 농가에서 생각하는 컨설팅의 문제점과 농업컨설팅 민간업체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컨설팅의 보완할 점을 새롭게 수립하는 방향을 살펴본다. 즉, 정부, 업체, 농가의 각기 다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컨설팅사업의 발전방향을 고찰해보는 것이 중점이겠으며 특히 수혜자인 농가 중심의 농업컨설팅의 연구가 필요하다.

### 3.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컨설팅 관련 자료나 문헌들을 검토하여 농업경영 컨설팅의 의의 및 개념을 정리하고 지난 7년간의 컨설팅사업의 연혁을 검토하였다. 또한 농업컨설팅은 컨설팅 후 바로 결과가 도출되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최소 2~4년 동안의 사업의 진행에 따라 소득이나 비 소득분야의 발전의 결과가 도출되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자료 및 보고서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여러 농가의 컨설팅 수혜현장을 직접 방문, 인터뷰하여 농가가 생각하는 농업컨설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알아보았다. 농업 컨설팅의 주최자인 농림부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농업 컨설팅과 관련된 기관을 직접 찾아가 관련 자료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컨설팅의 민간업체를 찾아가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측면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셋째, 연구방법은 직접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자료에 의한 농업컨설팅의 성공사례와 실패가 두드러진 사례를 통한 CASE식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역적 한계로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업을 업으로 하는 농가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농림부의 입장을 전라북도 도청 및 관련 연구기관으로 확장 하였다. 또한 많은 농업컨설팅 민간업체 중에 전북에 있는 농업컨설팅 회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전라북도 내에 이루어진 농업컨설팅에 대한 연구이며 전국에 있는 농업컨설팅의 문제점이나 향후발전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겠다.

## II. 본론

### 1. 농업컨설팅의 개념

#### (1) 농업 컨설팅의 연혁

1)농업경영컨설팅이란 농업이라는 특수 분야에 관한 컨설팅으로서 현재 농가의 당면한 경영, 기술상의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문제의 해결방안을 간구한 후 제시하여 경영체가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권고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농업 컨설팅의 시초는 우리나라의 1947년 미군정 당시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농업기술교육령이 발효되고 농사개량원이 설립되면서 정부의 농촌지도사업이 도입, 발전 진행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사업은 박정희 정권인 1962년 농촌진흥청 발족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로 농촌진흥청의 연구와 농촌지도소의 지도기능을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1997년에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기술

---

1) 이성환,, 『컨설팅이 양돈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전북대학교, 2002

센터>로 개편, 농업인상담소로 지도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의 농업시장 개방추세와 대농의 형식인 상업 농의 진전과 대형화, 전문화 추세에서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 경영지도는 점차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법인 정책이 시작됨에 따라 농업 경영에도 여타 기업의 경영기법처럼 경영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맞아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업경영의 개혁을 위한 벤치마킹 기법, 목표관리제의 도입이 검토되면서 농업경영 컨설팅의 시작점을 찾았다. 그 후 1997년말에 <농업경영 혁신을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후 본격적인 컨설팅업체가 설립되면서 민간 컨설팅업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농림부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농업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서비스의 경로와 주체를 수준별, 분야별로 다양하게 체계화 하도록 구상하였다.

그 당시 공공컨설팅과 민간컨설팅으로 양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공공컨설팅은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하였고 민간컨설팅은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그렇게 1999년부터 시작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많은 부작용을 산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부와 기타 관계부서에서 많은 보완점과 대책을 세웠으나 괄목할만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2)농업 컨설팅의 특징과 종류

2)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경영 컨설팅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 하였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업 경영 컨설팅은 전문서비스, 자문서비스, 일시적서비스, 상업적서비스 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 경영일반, 특수한 경영문제, 전문적인 기술문제로 요약 할 수 있다.

농업경영컨설팅의 서비스 영역은 분석과 진단(analysis, diagnosis), 지도와 권고(proposal) 또는 지도(guidance)등에 한정된다.

농업경영의 컨설팅 분야는 대상에 의한 구분, 방법에 의한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대상에 의한 구분은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종합컨설팅, 그리고 최근에 정보 분야컨설팅이 새롭게 추가 되었다.

방법에 의한 구분은 진단컨설팅, 지도(권고)컨설팅으로 나눌 수가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의 컨설팅 영역은 분야에 따라 경영과 기술, 그리고 컨설팅 내용에 따라 진단과 지도로 분류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기술, 경영, 진단, 지도 등의 최소 4가지 분야의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기술 분야에서는 수혜농가의 업종에 맞는 전문적 농업기술을 진단하여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기술 분야의 조언, 권고, 계획수립을 해주는 것이다.

경영분야에서는 수혜농가의 농업총수익, 순수익률, 자본수익률, 고정부채비율, 자기자본수익률, 총자본수익률 등의 진단을 통하

---

2) 이성환,, 『컨설팅이 양돈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전북대학교, 2002

여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수혜농가에 적절한 경영지도와 권고, 타당한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보 분야 컨설팅이 컨설팅의 한분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보 분야의 컨설팅은 과거의 농가들의 수동적인 정보망과 부족하고 적절하지 못한 정보인프라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재에 맞는 정보를 구축하고 정확한 판단을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진단을 해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경영, 기술의 컨설팅이 선행되어 있지만 정보 분야의 컨설팅이 적절히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의 농업의 경영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다.

## 2. 농업컨설팅의 현황과 문제점

농업 경영컨설팅 사업은 민간 전문컨설팅을 통해 농업투자의 효율성과 농가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추진방식은 농가신청에 의해 컨설팅 대상 농가를 선정하며, 민간 컨설팅 공급업체를 지정,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한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이에 7년간 농업컨설팅의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는 매년의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농업컨설팅에 대한 문제점들의 보고서를 통해 어느 부분의 문제점들이 초점이 되었는지 흐름을 고찰해야겠다.

(1) 과거 7년간의 농업컨설팅 현황(전라북도)

<표 1> 전라북도 농업경영컨설팅 연도별 추진내용

연도	참여기관·업체 (개소)		참여경영체 (건/호)		사 업 비 (천원)				
	지정	계약	신청	예약	보조금				
					계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250	125	1,769	968	6,780,643	3,682,773	2,328,987	1,353,786	3,097,870
99	35	11	69	30	254,475	123,900	74,340	49,560	130,575
2000	22	12	146	61	721,800	359,500	215,700	143,800	362,300
2001	31	16	235	108	778,200	389,100	233,460	155,640	389,100
2002	35	22	215	150	1,043,317	521,500	312,900	208,600	521,817
2003	32	19	309	158	892,438	445,710	267,428	178,282	446,728
2004	24	17	297	252	1,598,000	799,000	479,400	319,600	799,000
2005	71	28	498	209	1,492,413	1,044,063	745,759	298,304	448,350

※ 전국( '99 ~ ' 05) : 4,519개소( '99 : 197, ' 00 : 383, '01 : 552, ' 02 : 759, '03 : 855, 04 : 873, ' 05 : 900)

99년 이후 전체 컨설팅 업체 중 50%가량을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진행시켜왔으며 실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컨설팅 시장력을 꾸준히 확보해왔다.

99년부터 05년 까지 정부의 지원금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볼수가 있고 자부담비율이 50%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표 2 > 전라북도 농업경영컨설팅 형태별 추진내용

연도	형태별			품목별									
	계	개별	법인	계	축산	원예 특작	가공	쌀전 업농	RPC	APC	크리 스터	농촌 관광	유 기 농 업
계	968	792	76	968	869	76	14	6	2	1	-	-	-
'99	30	25	5	30	25	5	-	-	-	-	-	-	-
'00	31	53	8	61	58	3	-	-	-	-	-	-	-
'01	108	101	7	108	103	5	-	-	-	-	-	-	-
'02	150	141	9	150	137	6	7	-	-	-	-	-	-
'03	158	147	11	158	153	5	-	-	-	-	-	-	-
'04	252	139	13	252	233	18	1	-	-	-	-	-	-
'05	209	186	23	209	160	34	6	6	2	1	-	-	-
									'05년도부터 시행		'06년도부터 시행		

<표3> 04년 컨설팅 지원 및 업체현황(전국)

구 분	시설원예분야	축산분야	가공분야	종합기타	계
농업경영체(%)	132(14.4)	756(82.4)	29(3.2)	-	917(100.0)
컨설팅업체(%)	15(20.3)	39(52.7)	12(16.2)	8(10.8)	74(100.0)

업체 형태별로는 개별농가의 컨설팅사업 수혜 수가 법인의 컨설팅 수혜보다 많았으며 품목별로는 축산과 원예특작에 많이 치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새롭게는 05년부터는 쌀 전업농, RPC, APC가 새로운 분야의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06년부터는 크러스터, 농촌관광, 유기농업 분야에까지 농업 컨설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과거 7년간의 농업컨설팅에 대한 문제점의 흐름

3) 99년부터 정부주도 하에 업체와 연계하여 농업 컨설팅 사업을 실시 해왔다.

획기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이 산출 되었는데 그 문제점으로는 농업컨설팅 초기에는 농업컨설팅 업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농업컨설팅의 수혜농가들의 컨설팅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소득이나 결과물이 산출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그로 인해 정부는 업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체의 전문가 인원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업체의 농업컨설팅 인가를 내어 주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컨설팅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업체의 컨설팅을 이용한 자사제품 홍보, 판매 등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

3) 농림부, 『보도자료 2005. 12. 05』, 농림부 경영인력과

이 밝혀졌으며 여전히 업체 자체의 전문성 문제가 있어왔다. 그로 인해 비전문 인력이 타 분야 까지 컨설팅을 실시하여 진단 오류 발생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컨설팅에 필요한 농가 자체의 기술, 경영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컨설팅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또한 정부에의 농업컨설팅 비용지원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컨설팅 사업에 자부담을 투입 하여는 의지가 부족하여 농가와 컨설팅업체의 담합행위, 보조금 변칙집행 등 컨설팅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켜왔다.

이에 컨설팅 사업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후감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전문가인 일선 행정공무원이 단편적으로 사후관리, 감독하였고 형식적인 감사가 꾸준히 있어왔다.

요즘에 와서는 농가에 대한 컨설팅 사업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농가 스스로의 컨설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보조금 수혜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왔다.

또한 컨설팅사업의 대부분은 시설 원예 분야 나 축산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골고루 다양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농업컨설팅에 관한 인식의 차이

#### (1)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2000년에 실시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를 농업인 58명과 농업법인 42개소를 조사한 결과 컨설팅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업종에 대한 기술 또는 경영개선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에 대하여 농업경영 컨설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과 농가 가운데 79%가 잘 이행되고 있다는 4)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자료의 이면에는 소득분야의 증가에만 치중한 나머지 비 소득분야의 성장과 만족도 조사에는 연구와 조사를 기울이지 않아 이러한 만족도가 농업컨설팅의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맞게 균형적으로 발전한 결과인지는 의문이다.

컨설팅의 결과에 대한 성과지표로 컨설팅 이후 경영상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입증가, 작업편리, 비용절감, 수입안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아도 소득분야에 치중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매해 정부에서는 농업컨설팅의 사업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컨설팅 사업 보완책은 소득분야에 치중한 정책보완점이며 비소득분야인 조직 활동, 리더십 배양, 업종별 전문능력교육 등은 미약한 부분이 있다.

이에 농가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컨설팅사업의 보완점과 소득을 중심으로 보완정책을 발표하는 정부와의 견해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4) 최종민,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2002

(2) 5) 정부가 바라보는 농업컨설팅의 문제점

a) 소득분야

i) 국고비 지원문제

현행 컨설팅 사업 지원금은 전체 컨설팅비용에서 50%를 국고와 지방비로 보조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 사업지원은 특정분야, 즉 양돈사업 이나 원예사업 에만 편중 되 있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고와 지방비에서 농업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와 컨설팅업체의 담합으로 보조금 변칙집행이 왕왕이루어 지고 있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기조와 맞지 않게 컨설팅사업 자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자체에서 컨설팅 수요농가 선정시 형식적 심사로 인하여 실제로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는 농가가 상당수 선정되고 심의 위원회 등 전문가 심사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비 전문가인 일선 행정공무원이 단편적으로 선정, 또한 농가컨설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보조금 수혜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인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i) 업체와 농가의 담합행위

---

5) 농림부, 『보도자료 2005. 12. 05』, 농림부 경영 인력과 김정호, 허덕, 김연중,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또 하나의 큰 문제로서 농가와 컨설팅업체 담합으로 보조금 변칙 집행이 있다.

농가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할 때 『자부담을 투입하지 않아도 투입한 것처럼 처리 하겠다』는 농가의 요구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컨설팅 업체가 결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농가는 자부담 없이 계약하는 것은 업체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고 업체 또한 농가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 수용 하여 업체는 컨설팅 사업을 따내기 위하여 농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그러한 업체가 수주물량도 많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다.

### iii) 타산이 맞지 않은 업체의 사업진행

농업, 농가 경영컨설팅, 축산행정, 브랜드 컨설팅 등 많은 컨설팅은 99년부터 05년까지는 업체의 전문인 인원수를 4인으로 규정하였고 06년은 6인 07년 이후로는 8인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각각의 전문가는 농업컨설팅을 수혜 하는 농가에 대하여 사업계획, 마케팅, 정보관리, 가공시설 등의 전문적 컨설팅을 진단하여 주지만 최소 한달에 4명이 2번 이상 농가를 직접방문하는 것으로 가정해보면 업체의 전문가가 농가를 방문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나 정부에서 농가를 대신해 지원해주는 금액의 손익타산이 맞지 않아 업체의 최종 목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에서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맞지 않아 정부의 농업컨설팅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iv) 비공개인 농가의 회계분야

생산 기술 분야만큼 농가의 회계분야 컨설팅도 가장 중요한 분야중 하나이다.

농가의 회계분야 컨설팅은 실제적으로 소득과 금전의 회전율이 적은 소농가에는 다소 불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육계산업이나 원예사업 등 소득이 아주 크고 금전의 회전율이 높은 농가에서는 적절한 컨설팅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분야의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에서 회계장부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 솔직하게 외부의 조직에 대하여 자신의 금전정보를 알리려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가장 사적인 부분이 개입 되 있을 수 있으므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면이 있고 극단적으로는 적정한 농업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를 회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정부의 생각이 있다. 그러므로 업체나 정부에서는 개개농가의 회계부분의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힘이 들며 기존에 발표되었던 회계분야의 각종 보고서 역시 신뢰 할 수 없는 통계자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 b) 비소득분야

##### i) 생산기술 분야에 치중된 컨설팅

현재 컨설팅 사업은 분야별로 생산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종합 컨설팅, 정보 분야 컨설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실질적

으로 현재까지 컨설팅사업 이라 함은 생산기술컨설팅에 치중한 사업진행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재무회계(필수)+선택분야(1개)로 분야별 컨설팅 실시가 가능함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생산기술 지도에 치중해왔다.

이러한 컨설팅 사업아래에서 사료 등 기자재 컨설팅 업체에서 자사 제품 판매목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컨설팅이 이루어졌다는 여론도 있었다.

또한 업체에서의 전문가의 컨설팅뿐만 아니라 컨설팅은 업체와 농가간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음으로서 100% 컨설팅의 효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농가별 경영평가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컨설팅에 한계를 드러내어 컨설팅에 필요한 농가의 기술, 경영상태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구비한 농가가 거의 없어 실질적 컨설팅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에서 바라보기를 우리나라 농가는 태생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실상 진정한 경영컨설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가에서의 컨설팅 업체에 대한 불신과 농업컨설팅 대한 이해력, 습득력, 응용력 부족으로 인해 컨설팅 결과 도출된 의견을 농가가 수용하는 데도 많은 제약조건으로 어려움이 있다.

## ii) 농가와 컨설팅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차이

농가와 컨설팅 업체와의 법률관계는 민법과 상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이다.

업체는 도급과 위임, 대리의 법률효과로서 농가업의 컨설팅을

해주는 계약의 한 당사자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단지 업체와 농가를 중개하여주는 입장이고 자금을 지원하여주는 제3자이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계약상의 명문을 중시하여 기술부분나 회계부분 등 어느 한 분야의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주는데 계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농가의 입장에서서는 농업컨설팅을 계약의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농촌지도관 과거 농림부의 한 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아, 업체의 농업컨설팅에 대하여 자신이 수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켜지면 만족하고 수용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와는 다른 입장을 반복하여 업체와 농가간의 팀워크가 조성되기가 힘이 들며 서로간의 입장 차이에서 나타나는 불만을 토로하는 문제점이 있다.

### iii) 농업컨설팅의 집중도

99년 농업컨설팅 업체의 전문인 인증 인원수는 4명이며 앞으로 6명, 8명으로 순차적으로 전문인 보유 인원수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유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전문가를 보유하여 컨설팅을 받는 농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전문적 컨설팅을 위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인은 실제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이 아니라 타 기관이나 학회, 전문가로서 업체에 고용계약된 직원이 아닌 객원개념의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인 것이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업체의 이윤창출의 목적과 농가에 대한 적정

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보고서, 구두 등의 형식을 통해 성의 없고 주인의식 없는, 컨설팅에 대한 집중도가 전혀 없는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iv) 정부의 컨설팅 교육문제

농림부에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학회의 전문가에게 컨설팅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농림부 자체 컨설팅관련 공무원의 개인적,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교육 시간과 내용, 그리고 전문분야의 학문에서 학업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정작 컨설팅의 주최자이면서 컨설팅사업의 리더로서 정부 자체에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인 사업진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다.

### (3) 업체가 바라보는 농업컨설팅

#### a) 소득분야

##### i) 선(先)조직 후(後)지원체계

06년 현재 농림부의 농업 컨설팅 시행지침에서는 농업컨설팅 비용을 중앙정부 50%, 지방자치단체 20%, 자부담 30% 비율로서 분담 처리하는 형식이다.

컨설팅 업체에 대한 비용의 지급은 시, 군에서 자부담 투입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해당 비용을 컨설팅을 실시한 업체에게 지급을 하는 후불식 지급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컨설팅 비용의 후불식 지급체계는 정부의 농가의 자부담 투입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컨설팅의 자부담을 하지 않는 농업컨설팅의 폐해를 없애려는 의도는 적절하나 실질적으로 농업컨설팅의 생산 및 재무회계 분야 등의 신속한 자본투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농업생산기술에서 꼭 필요한 자본투입을 영세농인 농가에서 100% 모두 투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신속하고 급박한 자본의 흐름이 유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 ii) 농가의 자부담에 대한 인식문제

농업컨설팅의 비용 중에 30%는 농가의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있다. 앞으로 07년, 08년에 농림부는 농업컨설팅의 농가 자부담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의 적응과 농가의 경쟁력을 스스로 자생 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가들은 이러한 농림부의 계획에 아주 부정적이며 극단적으로는 농업컨설팅제도를 사(死)문화 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업체가 농가를 바라보기를 컨설팅에 대한 농가의 잘못된 배경지식과 인식이 바탕 되어 있다고 보

고 있다.

즉, 농업컨설팅의 수혜자는 농가이지만 농가 스스로의 자본투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업체에 의지하고 수동적인 농업컨설팅의 수혜자 입장에 서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의식이 농업인에게 질게 깔려있음으로서 전체 농업컨설팅 비용 중에 농가 부담비율 30%에도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고 이마저 컨설팅 투자비용을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 iii) 업체의 이윤창출 문제

현재까지 정부와 농업컨설팅 업체 간의 사업 진행을 공식적으로만 7년간 진행해왔었다.

정부는 컨설팅의 혜택을 받은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인하여 어느 정도 처음 사업기초에 맞게 목표를 달성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업체에서 보면 궁극적인 업체의 목표는 각 농가들의 업종별 진단을 통하여 농가소득의 기본적 출발점과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지만 농업 컨설팅으로 인한 컨설팅 업체자체의 소득률, 이윤률을 바라보면 결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컨설팅업체의 최소인원 전문가 4~6인의 인건비, 매달 농가의 방문 진단의 운영비, 정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교통비 및 제반 비용을 산출해 보면 농가 자부담액과 정부의 지원금을 통합해보아도 컨설팅업체의 손익산정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자체의 소득이 될 수 없는 사업인 것이 현실이다.

## b) 비 소득분야

### i) 농업 경영체의 관심부족

정부주도의 농업컨설팅 수혜 농가를 매년 몇 농가씩 선발하고 있다. 농업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는 많은 반면에 정부에서 선발하는 농가는 몇 가구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비용부담아래 업체를 통한 농업컨설팅의 혜택을 받는 농가는 극히 적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 스스로 업체를 찾아가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에 비추어보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농업 경영체의 자본력 미비함으로서 정부 도움 없이 농업컨설팅을 의뢰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비수혜 농가들은 자연히 컨설팅에 대한 정보나 관련기술 등을 정부에 대해 의지하게 되고 정부에서의 농가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각의 농가들은 컨설팅에 대한 사전정보와 부가사항에 대하여 무지(無知)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 ii) 컨설팅 주체들의 관점의 차이

농가, 정부, 업체를 농업컨설팅의 3주체이다. 농업 컨설팅에 대

하여 정부의 업체 선정, 그리고 컨설팅 수혜농가 선정, 정부의 계약체결, 정부자금 지원, 농가와 업체간의 컨설팅 사업 계획 등을 각 주체들이 수립한다.

하지만 각 주체들이 농업컨설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정부가 농업컨설팅을 바라보는 관점은 실적위주의 결과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그래서 농업컨설팅에 관한 사후 관리, 감독 또한 실적위주, 즉 수입량 증가, 자본의 회전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는 컨설팅을 바라보고 이에 기초하여 차후의 농업컨설팅 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농업컨설팅을 바라보기를 모든 문제를 정부와 업체가 해결해 주리라는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관점이 있다. 자연히 스스로 자신의 농업을 경영해나가는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업종별 전문기술분야, 조직 활동, 리더십 배양에 미약한 부분이 있다.

또한 농가의 농업 컨설팅의 수혜능력이 문제가 된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개개의 수혜농가의 농업의 현황과 진단을 내리고 전문적인 컨설팅의 권고사항이 도출이 되어도 이를 받아들이는 농가의 전문성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소화해 내는 데에 많은 애로점이 많다는 것이 업체가 바라보는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적 컨설팅을 100% 해주어도 이를 받아들이는 수혜능력이 40~50% 정도이면 그만큼 자본투입과 시간, 인력 투입의 효율성을 이끌어 낼수가 없고 컨설팅의 전반적인 발전은 더더욱 기대하기가 힘들다.

#### (4) 농가가 바라보는 농업컨설팅

a) 소득분야

i) 컨설팅 비용부담 문제

06년 현재 컨설팅비용 농가 자부담은 전체의 30%~50% 정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대체물로 컨설팅 업체에서 그만큼의 시설도구나 기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은 농가수입에 대해 부담스러운 부분은 적다. 그리고 자부담 비용을 사후적으로 국가에서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컨설팅 업체에게 비용지급을 하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에게 비용지급을 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농림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의 정책규정을 보면 컨설팅 사업 신청을 통하여 선정을 받은 농가는 1~2년간은 정부의 국고와 지방비의 자금보조지원을 받고 있지만 3년차부터는

농가의 자부담이 100%이므로 컨설팅의 사업 성격상 1~2년의 단기간에 컨설팅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가 힘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3년차에 100% 농가의 컨설팅 비용의 부담은 농림부의 정책이 조금은 무리가 있고 농가의 부담이 크므로 실질적으로 컨설팅사업 전반의 효율성,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농가는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컨설팅 수혜 3년차에 농가가 비싼 컨설팅 비용을 자체 부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실적으로도 컨설팅 3년째인 농가는 컨설팅재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현실적으로 농업컨설팅을 3년차 수혜 받는 농가는 농업

컨설팅 재계약을 취소하는 실정이다.

b) 비소득분야

i) 컨설팅 업체의 집중도와 농가의 의견수렴 문제.

위 정부가 바라보는 비 소득분야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농가에서도 업체를 바라보는 문제점이 있다.

업체에서는 농가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성심성의껏 컨설팅을 지원해주지만 관심이 없고 비중요한 듯한 분야에 대하여는 주인의식 없이 형식상으로만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회계분야나 다른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구두식으로 하거나 보고서식으로 대충 컨설팅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농가에서는 끊임없이 이의신청 및 불만사항, 건의사항을 올리지만 컨설팅업체의 전문가 최소인원, 즉 4명이 충원되어야하는 요건에 따라 형식상 객원전문가를 초빙하는 현 실태를 생각해보면 그것마저 잘 수렴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다. 주인 의식 없는 컨설팅, 형식상의 컨설팅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농가는 바라보고 있다.

## ii) 정부의 컨설팅사업 사후감사

농림부의 농업컨설팅 사업 지침서를 보면 컨설팅 사업 진행 후에 정부의 컨설팅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후관리, 감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시, 도 공무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토록하여 컨설팅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후 관리, 감독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철저한 정부의 업체와 농가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색출함으로서 컨설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사후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컨설팅 업체와 계약체결 지도,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사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농가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겠지 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농가에 대한 농업컨설팅사업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결코 농가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후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농가가 일방적으로 컨설팅 업체에 이끌려 당하고 이에 대한 농가의 문제제기, 농업에 관한 건의사항, 불만사항을 제기하여도 업체에서 이를 간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III. 결론

#### 1. 인식의 차이 극복방안과 해결가능성 여부

##### (1) 인식의 차이 극복방안 여부

농업 컨설팅의 3주체인 정부, 농가, 업체를 중심으로 99년 이후로 농림부 주도의 농업컨설팅 사업에 대한 시각차를 알아보았다. 이 인식의 차이는 농업 컨설팅의 사업에서 어느 위치에 서있는가에 따라서 같은 농업컨설팅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확연히 달랐다.

농업컨설팅의 실질적인 주최자인 정부는 지난 7년간 농업컨설팅을 주도해왔다. 지금껏 정부가 바라보는 농업컨설팅의 주요한 문제점들은 국고비 지원문제, 업체와 농가의 담합행위, 타산이율이 맞지 않은 농업컨설팅 업체, 농가의 회계문제, 한 분야에 치중된 농업컨설팅, 업체의 농업컨설팅의 집중도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이와 같은 문제로 업체 또한 정부의 선(先)조직 후(後)지원체계의 농가 자금지원문제, 농가의 자부담에 대한 인식문제, 업체의 이익창출 문제, 농업 경영체의 관심부족, 컨설팅 주체들의 관점의 차이 등이 정부와 대부분 공통되는 컨설팅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지적 할 수 있다.

농가가 지적한 컨설팅에 대한 문제점은 컨설팅의 비용문제와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 사업진행에 있어서의 집중도, 정부의 컨설팅 사업의 사후감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농업 컨설팅의 3주체가 제시한 농업컨설팅에 대한 문제점은 공통적인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이다.

하지만 공통적인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분야가 동일하다고 하여 문제점의 내용 또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많은 문제점들 중 가장 이견차이가 있는 문제는 국고비 지원문제이다. 정부나 업체, 농가들은 국고비 지원정책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비 지원에 대한 개개농가의 업종에 따라 편중된 국고 지원에 대하여 문제를 꼬집었다. 업체는 정부의 선 조직 후 지원 체계로 인한 투자의 효율성, 신속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농가는 자부담비율에 대한 부담을 문제제기 해왔었다.

컨설팅사업의 한 분야에 대한 각 주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에도 내용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인으로서 각 주체들의 기본적인 컨설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정부의 결과주의에 입각한 정책 방향, 그리고 업체의 이윤창출을 기초로 한 투자인식, 농가의 피해의식과 수동적인 정부의지형 자세 등이 주원인이겠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서는 실질적인 예산과 사업의 계획자인 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수용하고 이에 맞는 실질적인 업체가 제시하는 문제점과 농가들의 의견사항들을 접수하여 앞으로의 컨설팅 사업을 이끌어가야 함이 마땅하다.

업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컨설팅 업체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기존의 농업컨설팅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업체가 농가에 컨설팅의 전문 지식과 정보를 투자한 만큼의 이윤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놔줘야 한다.

그럼으로써 다음의 컨설팅 사업에 대하여 더욱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정책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또 다른 점으로서 명문상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정책이라 해도 정책 수혜자들과 관계된 제 3자간의 현실적인 작용과 반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향후 대책

농업 컨설팅의 문제점의 향후대책으로서는 소득 분야와 비소득분야로 나누어 수립해야한다.

### a) 소득분야

소득분야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으로 정부의 비용지원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향후 농업컨설팅에 대한 비용을 앞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차후에 감소시킨다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증가시키고 후에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의 적응을 이유로 컨설팅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점차 농가의 정부의존도를 증가시키고 다음에 바로 정부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의 정부에 대한 불신도가 증가할 것이다. 정부비용부담대책으로는 정부의 컨설팅비용 지원금에 대해서는 45~50%를 꾸준히 유지시켜 정부의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하여 농가를 경쟁력 있는 농가로서 변화 시킬 수 있고 또한 농가의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50~55%까지 증가됨으로서 자신의 컨설팅 투자금의 비용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업체 및 정부에 대한 사업진행에 대하여보다 많은 관심과 사업의 협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농가의 컨설팅비용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여 컨설팅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수적 정책이 필요하다.

업체의 이윤창출의 문제에서는 업체의 농가 컨설팅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부대비용이 컨설팅사업 으로서 얻어진 수익에 버금가는 비용지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윤창출을 궁극적인 목표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농업컨설팅 사업이 결코 비전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컨설팅업체의 이윤창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대로 업체의 이윤창출에 무관심하게 되면 컨설팅 3주체중 하나인 업체의 성장 가능성이 없으므로 농업 컨설팅 사업이 전문성과 발전성이 퇴보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정부의 자금지원 시스템에 대하여 선조직후지원 체계는 신속한 농업컨설팅 사업의 투자의 신속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사후 지급이 아닌 때에 맞는 자금의 흐름도와 투자의 신속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금투입이 이루어져야 컨설팅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가의 회계분야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시간 정보 정보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개개의 농가에 대한 회계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기존까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또한 신뢰성이 있는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컨설팅의 기술적인 부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겨져야 부분이 회계부분이다 더욱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농가 개개의 회계분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농가의 재정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하고 미래의 농업정책계획에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 회계의 정보력 확보로서 고수익

농가의 세금납부 상황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고 투명한 세금납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 b) 비 소득분야

컨설팅의 비 소득분야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조직관리, 리더, 농가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농업교육이 주 분야이다.

기존의 농업컨설팅이라 함은 소득분야, 즉 금전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개개의 농가의 소득증가에만 집중하고 정부의 정책 또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농업컨설팅이 나가야 할 방향은 농가 개개의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근시안적이고 수동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농가 개개인의 컨설팅 자력을 정립시켜주는 것이 앞으로의 농업컨설팅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즉 정부나 업체의 컨설팅이 없어도 농가개개인의 컨설팅 능력, 자유 시장 체제에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이 향후미래의 농업발전에 더욱 긍정적 결과를 창출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컨설팅에 대한 농가의 수동적, 정부의지형의 인식 자세를 고정시켜주어 좀더 독립적이고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사설업체와 연계하여 농가단위의 성격에 맞는 농업리더교육, 조직관리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영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또한 연합컨설팅, 영농간의 조직구축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개개의 농가가 미래의 영농의 대형화, 브랜드화 추세에 밀리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기존의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다.  
이로써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정부와 업체와 농가의 인식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고 실질적인 컨설팅 사업의 수혜자인 농가의 미래의 농업발전에 주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정호 외, “농업경영 컨설팅의 성과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24권 제 4호, 2001

농림부 보도자료, “농림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대폭 개선”, 농림부 경영인력과, 2005

김정호 외,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이성환, “컨설팅이 양돈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2001

최종민,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2002

농림부, “농림부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김종업, “신경영컨설팅”, 갑진출판사, 1995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대비한 농가경영컨설팅 기법교육”, 2002

농림부, “농업경영컨설팅 우수사례집”, 2004

농림부, “농업 경영 컨설팅 업체 현황”, 2006

농림부 농업연수원, “농업 경영 컨설팅 과정”, 2005

농협중앙회, “2005년 농업경영컨설팅 보고서”, 2006